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81

발의연월일: 2022. 7. 11.

발 의 자: 김주영·고용진·김민철

김수흥 • 양경숙 • 윤후덕

장철민 • 전용기 • 정일영

조정식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(출자금)에 대한 이자 (배당)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(FTA),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(농가소득/도시근로자 소득 비율: '00년 80.6% → '21년 64.1%)을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87조의 2, 제88조의5, 제89조의3).

#### 주요내용

- 가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87조의2).
- 나.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 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(안 제 88조의5, 제89조의3).

법률 제 호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6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,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6년 1월 1일"로 하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 -----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」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\_ 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2024년 12월 31일-----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 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 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·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 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) -----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・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

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

<u>202</u>
4년 12월 31일까지
· 1. <u>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</u>
12월 31일
2. 2026년 1월 1일
2. <u>2020 년 1 년 1 년</u> 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율과세 등) ①

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<u>2024년</u> 12월 31일
12 章 31 章 
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
월 31일
 ② <u>2026년 1월 1일</u>